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3일, 장종태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상정(2024. 11. 1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 의결(수정가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은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보고 있는 공익활동형과 관련된 것으로, 2022년부터 활동비가 최저임금 수준 아래로 떨어진 상황임.

개정안과 같이 노인일자리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특히,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경우,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판단되고 있는바, 근로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논거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공익활동형은 자기만족·성취향상 등을 위한 자원봉사 성격이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견도 제시될 수 있으며, 그 외 개정에 따라 노인일자리 현장에 미치는 부수적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자원봉사적 성격 및 노인빈곤률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을 ‘활동비’로 수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자 보호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는 등 안 제23조제2항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함(안 제23조제2항).
- 나. 시행일 “2024년 1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함(안 부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안 부칙 중 “2024년 1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생략) <u><신설></u>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u>② 노인일자리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한다.</u>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u>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생략)</u>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u><부칙></u> 이 법은 <u>2024년 11월 1일부터</u> 시행한다.	(개정안과 같음) <u><부칙></u> ----- <u>2026년 1월 1일</u> -----.

법률 제 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생 략)	제23조(참여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 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 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 록 노력한다.</u>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